

東拓의 移民事業推進에 關한 研究

朱 奉 圭

I. 問題의 提起

1908년에 設立된 東洋拓殖株式會社는 1910年에서 1918年에 걸쳐서 推進된 土地調査事業의 前哨的 基地役割擔當이라는 側面에서는 물론 設立當時에 韓日合作投資라는 美名下에 基金造成過程에서 農民階層分화를 促求케 한 바 있었다는 側面에서 우리들의 많은 關心을 集約케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分野에 對한 研究도 活潑하게 이룩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設立目的이나 進出이 어느 面에서는 韓國에 있어서 拓殖事業을 營爲하러 함이 分明하였고 그리하여 日本으로부터 善良한 農民을 移住定着시키코져 함이 뚜렷한 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東拓의 韓國移住에 關한 研究가 活潑하게 展開되지 못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本稿는 東拓의 韓國移民定着에 關한 實相을 究明定立함에 目的을 두고 있다.

II.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移民事業展開

日帝는 開港以後 韓國으로부터 米穀을 중심으로 한 穀物을 輸入하고 綿製品을 비롯한 工業製品을 輸出하여 이른바 原料의 供給地市場化라는 植民地型 貿易構造를 形成하기 시작하였다. 1904年の 露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은 韓國에서 排他的 優越權을 確立하고 뒤이어서 財政整理,

帝宅財産整理라는 名目으로 廣範한 國有地를 創出確保케 되었다. 그리고 韓日合併後에는 1910年代의 土地調査事業, 1920年代의 産米増殖計劃, 1930年代의 農村振興運動 그리고 1940年代의 戰時經濟體制로의 再編成이라는 일련의 植民地政策農政을 遂行함으로써 韓國農村의 철저한 疲弊를 招來케 하였으며 동시에 日本資本主義의 規定性에 依한 經濟構造의 隸屬을 隨伴케 하였다.

東洋拓殖株式會社는 바로 이러한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서 그리고 그의 前哨基地로서 設置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設立構想에서부터 統治機構의 私的形態 또는 效率的인 農業收奪機構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日帝는 1904년부터 1907年 사이에 3次에 걸친 韓日協約을 締結시킴으로써 韓國의 外交權을 剝奪하였고 뿐만 아니라 顧問政治를 시작하였으며 交通, 通信 및 金融體系를 掌握한 바 있었다. 그 밖에도 1907년에는 土地收奪의 前哨作業인 國有地整理作業을 시작하였고 1908年에 이르러서는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을 發布하여 日本人의 土地所有를 合法化케 하였다.¹⁾ 例하여 日帝는 1906年 10월에 土地家屋證明規則이라는 臨時法規를 발표하여 日本資本의 土地買收와 所有權을 法律的으로 確認保障하였으며 同年 12월에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을 發布하여 日本 商業高利貸資本의 土地, 家屋에 對한 收奪을 合法化케 하였다는데서 그러한 本質을 充分히 살펴볼 수 있고 1908年 7月の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이 곧 土地家屋證明規則을 補完한 것으로 土地家屋의 賣買, 贈與, 交換 및 典當의 경우 法律的인 保障을 받아 證明이 可能케 되므로써 強制執行이 實質化케 되었다.

그런데 合併前의 韓國이 實質的으로는 植民地이었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獨立國家이었으므로 보다 效率的인 收奪機構의 設置가 切實하였고 또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그 機構가 단순히 經濟的인 利益을 追求하는 私的인 形態가 아니라 植民地政策에 副應하는 國家的 機關의 性格을 띠

1)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先進文化社, 1983, pp. 132~133.

우게 되었다. 例하여 英國의 東印度會社와 같은 趣旨에 바탕을 둔 會社를 設立하여 日韓關係를 더욱 密着시키고 定着시킬 필요에서이었다.²⁾

더우기 露日戰爭後 日本은 1904年 9월에 朝鮮興業株式會社의 設立을 起點으로 많은 移民會社가 設立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1906년에 이미 日本人 農家戶數가 1,065戶, 그리고 農家人口數는 2,917名에 이르렀다는 內容³⁾에서 日本이 移民에 對한 關心을 集中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韓國으로의 移民은 單純히 過剩人口의 排出政策이라는 意義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는 韓國農村에 日人村落을 建設함으로써 統治의 據點을 鞏固케 함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軍事的으로는 日帝의 大陸侵略을 위한 土臺의 構築이라는 意中이 깊이 聯關되고 있었다.

이에 日本의 移民政策이 20世紀初 朝鮮農業移民으로 轉換集中케 될에 따라서 政治, 經濟 및 軍事的의 모든 側面에서 그의 要求를 充足시켜야 할 立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當時 이미 半植民地化되어 버린 韓國에서 植民地收奪政策에 적극적으로 副應할 수 있는 國策代行機關의 設置가 強力하게 要請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要請에 副應키 위하여 設置運營된 것이 바로 東洋拓殖株式會社라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東洋拓殖株式會社의 韓半島 進出動機와 目的⁴⁾은 韓國이 있어서 拓殖事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었고 日本으로부터 善良한 農民을 移植시켜 低利의 拓殖資金을 供給케 하려 함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內容은 東拓 定款 第1章 2條⁵⁾에 東洋拓殖株式會社는 韓國에서 拓殖事業을 營爲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에서 뚜렷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것이 眞正한 意味에서의 目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은 日本帝國主義的 屬性에 強하게 規定된 日本資本主義의

2) 青木香代子,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朝鮮史料研究會), 1960.5, p.113.

3) 趙璣濬, 「日人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知識産業社, 1985, p.57.

4)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拓十年史」, 1918, p.1.

5)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 1908.10. 認可(韓國中央農會報) 2卷 10號, p.31.

要求에서 찾아 보는 것이 當然한 것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東洋拓殖株式會社の 韓半島 進出動機와 目的은 곧 移民事業을 통하여 植民統治機構의 末端을 構築함과 동시에 植民地農業을 開發함으로써 市場의 擴大를 期하러 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무릇 東洋拓殖株式會社の 設立에 있어서 日本政府는 東拓에게 補助金を 支給하는 것을 名分으로 韓國政府에게 驛屯土 및 宮庄土 約 10萬町步 가운데 將次 事業上 가장 有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出資形式으로 讓渡토록 張翼함에서 이룩되었다. 이에 따라 韓國政府는 定款 즉 東洋拓殖株式會社는 韓日政府가 畝 57,000町步 및 田 57,000町步, 合하여 114,000町步의 價格이 300萬圓에 該當되는 財産價格에서 出資하고 이에 對하여 60,000萬株를 配當키로 한다는 것에 根據하여 設立케 된 바 있었다 함은 周知되어 있는 事實이다.

이렇게 하여 設立된 東洋拓殖株式會社の 役割은 土地所有의 大型化에 對한 前哨基地로서의 目的을 充實하게 遂行케 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役割을 擔當한 東洋拓殖會社の 土地所有의 集中現象은 東拓이 스스로 大型화된 地主로 看臨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日本人 大地主의 出現을 可能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地主經營에 의한 地主制展開에 促求的 契機로 特徵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이다.

東拓은 그밖에도 日帝 侵略의 典型的인 機構로 具體化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東洋拓殖株式會社는 첫째 拓殖事業을 營爲키 위한 農業經營, 둘째 拓殖을 위해 필요한 土地의 賣買 및 貸借, 셋째 拓殖을 위해 필요한 土地의 經營 및 管理, 넷째 拓殖上 필요한 建築物의 築造, 다섯째 日韓移住民의 모집과 分配, 여섯째 拓殖上 필요한 資金의 供給, 일곱째 日韓移住民 및 韓國農業經營者에 대하여 拓殖上 필요한 物品의 供給과 生産 및 確保한 物品의 分配, 여덟째 附帶事業으로 韓國에서 水産業 기타 拓殖上 필요한 事業의 經營⁶⁾이라는 事實에서 拓殖을

6) 東洋拓殖株式會社, 「前掲書」, pp. 207~234.

目的으로 한 機構가 되어 있었다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더우기 1917年 以來 日帝의 植民地圈 擴大要求에 대응하여 東拓의 事業範圍는 韓國의 全域에 걸쳐서 擴散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1927年에 이르러서는 東拓 總株數가 100萬株에 이르렀다. 日本 大藏大臣 6萬株, 內藏頭 25,000株, 米穀商人 岡半商社株式會社 9,375株, 釜川合資會社 9,110株, 朝鮮總督 8,500株, 黑川商店 8,047株 등 大株主로 構成⁷⁾되어 있는 事實들이 이것들을 充分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떻든 東拓의 本質은 大地主經營의 地主制展開와 土地調查事業施行의 前哨的 基地로서 그의 役割을 遂行케 함에 있었던 것이 事實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本質은 무엇보다도 拓殖 事業推進展開에 關聯된 移民事業의 本性에 있었다 함을 決코 看過할 수 없다. 왜냐하면 東拓의 移民事業推進의 趣旨인즉 堅實한 內地農民을 植民地韓國에 定着分布케 하여 土地의 所有權을 取得시킴으로써 永久的으로 土着케 한다는 意中이 깊숙이 內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移民事業推進의 趣旨와 內容의 實相은 移住民의 資格條件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① 現役關係가 없는 滿·20歲 以上の 男子.
- ② 相當한 資力이 있을 것.
- ③ 身體強健하고 勞動에 견딜 수 있을 것.
- ④ 土着의 意志가 強하고 勤勉할 것.
- ⑤ 家族을 帶同하고 移住地에 居住하면서 農業에 從事할 것.

7) 東拓法 8條에 東拓의 總裁를 朝鮮總督으로 任命하되 任期는 5年으로 하고 鮮滿拓殖會社의 業務를 分掌하는 理事는 50株 以上을 保有하되 任期는 4年, 業務監事를 하는 監事는 30株 以上の 保有者로 任期 2年으로 하며 監事와 理事는 2倍數 以上の 候補者 가운데 선거하여 朝鮮總督이 任命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同 24, 25 및 26條에서는 이 會社의 實質的인 業務 모두를 朝鮮總督이 管掌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 朝鮮總督의 權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8)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海外營農定着戰略에 關한 집포지음」, 1987. 11, p. 67.

⑥ 第二種移民의 경우에는 상당한 農業教育 또는 農事經驗과 營農財力 및 鄉黨間에 상당한 信望이 있을 것.

그리고 東拓의 移住規則의 改正에 따른 移住形成의 變遷을 정리한 것이 바로 <表 1>에서와 같다.

<表 1> 東拓의 移住規則

改 正	第1種 移 民		第2種 移 民	
	單 戶	團 體	單 戶	團 體
移住規則 (1910.9)	(甲種移民)		(乙種移民)	
	○1戶別	○10戶以上 ○移住費融資 (戶當 200円)	○東拓小作人	○左同
	○田畝 210町步 以內	○左同		
	○年利 6% 2年 償還	○左同		
第1次 改 正 (1915.4)	○元利金据置期間 (5年)	○左同	○田畝 10町步以內 ○半額 一時拂 ○半額 7.5% 25年 償還	
第2次 改 正 (1917.3)	○移住金融資 (戶當 200円)	(削除)	○一時金を $\frac{1}{4}$ 로 減額 ○金利 7%로 引下	
第3次 改 正 (1922.1)	(削除)		○5町步로 引下	
	全面中斷(1927)			

資料：東拓朝鮮支社, 「東拓の殖民事業」, 1935, 第4章에서 作成.

위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移住形式은 第1種移民(甲種移民)과 第2種移民(2種移民)이 있었고 第1種內에 單戶와 團體의 두 形式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第1種 單戶는 2町步 以內的 自作農으로 定着시키는 것으로써 地價는 年利 6%로 25年에 償還하게 하였다가 第1次 改正에서 元利金据置期間(5年)이 追加된 바 있었다. 그후 第2次 改正에서 戶

別로 200원의 移住金(3年償還)이 融資되었다가 第3次 改正에서 削除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第1種 團體는 10戶 以上이 團體로 移住하는 경우로서 모든 支援條件은 個人의 경우와 같으나 처음부터 移住費가 支援되었다가 第2次 改正에서 削除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이다.

그리고 第2種 移民은 第1次 改正에서 처음으로 設定된 것인데 이것은 戶當 10町步 以內的 土地를 갖게 하고 그것의 半額은 一時拂 나머지 半額은 年利 7.5%로 25年 동안에 償還케 하였다. 그러하다가 第2次 改正에서 一時拂 限度를 地價의 $\frac{1}{4}$ 로 또한 金利도 7.5%에서 7.0%로 引下하였으며 第3次 改正에서 分讓限度 10町步를 5町步로 半減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떻든 當時에 移住促進을 위한 여러가지 資金貸付條件內容을 仔細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移住費 貸付金

- 첫째 : 戶當 200원 以內
- 둘째 : 年率 年 7%
- 셋째 : 25年 均等償還(5年據置)

② 救濟貸付金

- 첫째 : 戶當 200원 以內
- 둘째 : 土木工事費條로 戶當 500원 以內
- 셋째 : 年 利率 7%
- 넷째 : 10年 均等償還(2年據置)

③ 新規土地買收貸付金

- 첫째 : 貸付限度는 戶當 5,000원 以內
- 둘째 : 年利率 10%
- 셋째 : 15年 均等償還(2年據置)
- 넷째 : 貸付率의 경우 擔保物 同規定價格의 $\frac{2}{3}$ 以內

④ 農事關係貸付金

첫째 : 農事改良低利資金利率(例 肥料 : 月 1.2%, 農具 : 月 1%, 種
· 苗 : 1期 10%이나 移住初年에는 年 0.7%)

둘째 : 1年 以內의 短期資金 但 農具는 3年 償還

以上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生活費를 除外한 農業關係資産과 住
宅費가 一切 支援되고 있었다. 天災地變에 對한 配慮는 물론 新規土地
購入資金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資金配慮로 營農定着이 어렵
게 되었으리라는 觀測을 할 수 없을 程度로 거의 完璧하게 메꿀어졌다
고 할 수 있음이다.

이렇듯 甲·乙種 두 種類 바탕에서 移民이 있었거니와 그 가운데서
甲種이란 移住契約當時의 割當地 價格에 年 6分의 利子を 더하여 25年
以內에 年賦償還케 함으로써 土地의 所有權을 讓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乙種은 東洋拓殖株式會社로부터 土地를 貸付받아 小作을 하고
小作料를 納付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乙種 移民事業의 경우는 그 成
績이 좋지않아 1914年 4월에 移住規則을 改正하여 乙種移民을 廢止하고
甲種을 第1種으로 改稱하여 세르이 第2種 移民을 募集하는 가운데 推
進된 바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⁹⁾

第1種 移民은 以前의 甲種移民과 같은 것으로 戶當 2町步以內의 土
地를 割當받고 있는 것이었으며 第2種 移民은 戶當 10町步以內의 土地
를 割當받아서 일부는 自作하고 나머지는 他人에게 小作을 줄 수 있는
것이였다. 이 第2種 移民은 割當地 價格의 半額以上을 일지에 支拂하
고 殘額은 年 7分 5厘의 利子의 함께 25年 以內에 年賦償還케 함으로써
土地의 所有權을 讓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였다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移民種別의 變更과 더불어 移民事業의 促進을 위
하여 移住民에게 各種의 惠澤을 주고 있었음인데 그의 惠澤의 主要內容

9)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 三十年誌」, 1938, pp. 180~181.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以前 移住費貸付는 移住初年에 限定하고 있었지만 이 以後부터는 移住後 3年동안 貸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둘째, 團體移住民을 以前에 10戶로 組織하고 있었던 것을 5戶로 바꾸어 施行하였다는 것.

셋째, 以前에는 漁業移民에 關하여 別途의 規定이 없었지만 以後부터는 漁業을 目的으로 하는 移民에게도 7段步以內의 土地를 割當받도록 하였다는 것.

넷째, 移住民의 敎育과 衛生上의 保護施設, 農事指導, 農具의 貸付 등의 貸付에 關한 明確한 規定을 하였다는 것.

이러한 移民事業은 그 후 1917年 3月에 다시 移住規則을 改正하여 第 2種 移民에게 좀 더 빠른 時日內에 土地所有權을 讓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1921年에는 第 1種 移民을 廢止하였고 1926年에 이르러서는 移民事業을 中斷하는 事態까지도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東洋拓殖株式會社를 媒介體로 할 移民事業推進의 意圖는 어디까지나 自小作農民을 全國에 擴散하는 가운데 散在立地시키려는 것에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移民事業에 對한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意圖가 첫번째로 挫折된 것은 乙種 移民事業의 失敗에서 起因되는 것이었다.

自小作農이라 할 수 있는 乙種 移民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應募戶數나 承認戶數가 甲種 移民에 比하여 매우 적었다는 側面에서 그것의 原因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東洋拓殖株式會社は 1914年 以後 乙種 移民을 廢止하고 自小作農이라 할 수 있는 第 2種 移民과 地主階層이라 할 수 있는 2種 移民을 募集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나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自小農誘致를 完全히 포기하고 오히려 地主層을 育成하려는 方向으로 轉

10)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文閣, 1973, 第 6 章 3節 參照.

〈표 2〉 甲·乙種 移民戶數

回 期	年 度	應 募			承 認		
		甲	乙	計	甲	乙	計
第 1 回	1910	1,161	74	1,235	135	25	160
第 2 回	1911	1,654	60	1,714	710	10	720
第 3 回	1912	2,044	42	2,086	1,163	4	1,167
第 4 回	1913	3,361	104	3,465	1,316	—	1,316
第 5 回	1914	1,964	—	1,964	1,108	—	1,108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1915.

換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 되고 있었으므로 1921年 第 1 種 移民의 廢止는 곧 地主農의 育成을 窮極의 目的對象으로 하는 것이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變化는 급기야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移住民을 沒落하여 가는 移住民과 高利貸的 手段에 의하여 土地와 勞動을 集積케 함으로써 보다 더 昇格케 하는 移住民으로의 兩極分解케 하는 結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됨이다.

그러므로써 移住民이 제대로 定着되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1926年을 起點으로 移民事業이 한때 中斷케 되는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도 事實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帝下 東拓을 媒介로 하여 推進한 移民事業은 植民地農業展開에서 自小作農民을 全國에 散在定着시켜 植民地農業의 構築을 더욱 鞏固히 하려 함에서 이룩케 된 바 있었다 함에서 그의 歷史的인 意義와 性格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물론 東拓은 土地의 管理經營事業 및 移民事業이 主된 것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以外에도 金融事業을 遂行하는 役割의 分擔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것은 바로 移民事業推進展開의 觸媒劑로서 推進된 바 있었다. 東拓의 金融事業은 定期·年賦償還方法으로 普通貸付를 行하는 것과 他會社의 株式 및 債權을 引受하여 資金을 供給하는 것이 되고 있었다. 普通貸付에는 日本人 農業移民에게 移住費를 貸付하는 것과 一般人에게 農事改良 및 土地改良事業에 필요한 資金을 貸付하는 것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貸付金의 利率은 最高年 1割 2分, 最低 7分이고 農工債權의 利率은 年 6分 3厘가 되고 있었다. 貸付金의 利子에 對한 收益은 農業收益과 더불어 東拓 收益의 根幹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當時 貸付方法에 對한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¹¹⁾

첫째, 移住民에게 25年 以內의 年賦償還 또는 5年 以內의 定期償還으로 移住費를 貸付토록 한다.

둘째, 生産者에게 그 生産物을 擔保로 1年 以內에서 貸付하도록 한다.

셋째, 30年 以內의 年賦償還 또는 5年 以內의 定期償還으로 不動産, 鐵道 및 鑛業權 其他 不動産上에 權利를 擔保로 貸付토록 한다.

넷째, 公共團體 또는 特別한 法令에 의하여 組織되어진 組合에게 30年 以內의 年賦償還 또는 5年 以內의 定期償還條件下에 無擔保로 貸付토록 한다.

다섯째, 農業者 20名 以上 連帶債務를 지는 경우 5年 以內의 定期償還으로 無擔保 貸付토록 한다.

여섯째, 移民 取扱業 기타 拓殖事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設立된 會社의 債權 또는 株式의 應募와 引受를 하도록 한다.

일곱째, 會社의 株式 또는 債權을 擔保로 5年 以內의 定期償還의 方法으로 貸付토록 한다.

여덟째, 法令에 의하여 設치된 財團 기타 착실한 物件을 擔保로 30年 以內의 年賦償還 또는 5年 以內의 定期償還으로 貸付토록 한다 것 등등이 主된 內容의 것이 되고 있었다.

이렇듯 東洋拓殖株式會社는 그의 事業의 一環으로 金融事業을 主要業務로 하고 있었던 것이 事實이나 그것의 主된 目的은 移民事業推進의 促求手段으로 具體化되고 있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인데 이에 더하여 그의 實質性을 貸付高의 推移에서 뚜렷이 살펴볼 수 있게 된다(表 3 參照).

11)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拓十年史」, 1918, pp. 19~20.

〈丑 3〉 貸付高 推移

(單位：圓)

年 度	定期・年賦償 還貸付高	株式債權引受 高	合 計(A)	A中 韓國의 部分(B)	B A (%)
1909	221,900	—	221,900	221,900	100
1910	595,330	—	595,330	395,330	100
1911	1,166,761	1,000,000	2,166,769	2,166,769	100
1912	2,473,494	1,000,000	3,473,719	3,473,494	100
1913	4,045,719	2,300,000	6,345,719	6,845,719	100
1914	5,451,187	2,300,000	7,751,187	7,751,187	100
1915	5,813,587	1,650,000	7,463,587	7,463,587	100
1916	5,839,271	1,100,000	6,931,271	6,939,271	100
1917	12,278,038	3,627,500	15,905,538	8,267,561	52
1918	32,914,386	6,475,500	39,389,886	17,661,527	45
1919	70,968,611	15,527,840	86,496,451	33,605,458	39
1920	94,577,720	15,499,352	110,077,072	44,155,010	40
1921	117,043,607	22,838,498	139,882,105	53,047,978	38
1922	126,796,631	24,123,143	150,919,182	54,094,623	36
1923	151,987,029	21,710,773	173,697,802	53,114,620	31
1924	148,719,311	19,272,720	167,992,031	54,732,193	33
1925	142,795,089	18,738,418	161,533,507	54,811,878	34
1926	126,920,810	14,473,340	141,394,150	53,598,000	38
1927	123,235,636	21,119,984	143,355,620	60,628,000	42
1928	125,074,938	18,688,239	143,763,177	66,072,818	46
1929	124,633,702	27,780,680	152,414,382	73,708,000	48
1930	132,287,938	35,990,752	167,278,690	83,019,000	50
1931	136,679,607	36,037,796	172,717,403	88,834,000	51
1932	133,882,048	39,579,463	173,461,511	88,996,000	51
1933	115,089,531	49,421,462	164,510,993	85,383,928	52
1934	115,327,598	78,285,808	193,613,406	84,409,660	44
1935	138,108,566	116,721,532	254,830,188	94,933,808	37
1936	143,605,242	153,799,309	297,404,551	93,043,816	31
1937	159,573,275	192,007,776	351,581,150	100,514,880	29

資料：①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1938年度。

② 東洋拓殖株式會社，「業務要覽」，1927年 9月。

③ 東洋拓殖株式會社，「三十年誌」，1931年 3月。

④ 東洋拓殖株式會社，「業務報告書」，14期~45期 等等에 依하여 作成한 것임。

어떻든 東洋拓殖株式會社는 그의 主된 機能의 一環으로 推進한 金融 事業을 媒介로 移民事業과 拓殖事業을 內實性있게 推進展開한 바 있었던 局面을 알 수 있게 된다.

東拓의 이러한 移民事業推進이 1917~1926년까지 日本地域에서 韓國으로 移住할 農業移民을 17次¹²⁾에 걸쳐서 施行하였다는 事實에서 東拓의 移民事業推進의 本性을 쉽게 理解할 수 있게 된다.

더우기 東拓의 移民事業推進의 경우 農業移民者는 咸鏡北道를 除外한 全國 82郡의 349個邑面에 該當되는 地域에서 交通이 便利한 곳이나 日本人 部落의 隣接地域 그리고 적어도 市場에서 20里 以內的 土地를 拂下받은 條件에서 이룩되었다.¹³⁾

東拓은 이렇듯 이것들을 分類하여 1種 移民者는 2町步, 2種 移民者는 10町步를 配當해 주었는데 1922년부터는 5町步 未滿으로 統合하였다. 어떻게든 日本 農業移民者들은 1·2種을 莫論하고 처음에는 모두 小作經營을 하였으나 그외에도 高利貸企業을 併行하여 資本을 蓄積하고 隣近의 韓國人 土地를 買入하여 地主로 成長하여 나갔던 것이다.¹⁴⁾

그리고 1920年代에 韓國으로 移住한 日人 역시 日本大藏省의 政策에 의하여 總督府側과 事前 協議되어 推進된 것이었다. 그것은 곧 日人 對象者에 대한 移住獎勵金에 對한 支給은 물론 交通便宜까지 提供하였던 事實에서¹⁵⁾ 日帝의 政策的인 事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韓國人은 土地를 喪失當하고 困窮에 빠져 結局 沒落할 수 밖에 없었으며 零細小作農들은 農村에서 遊離當하는 現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밖에도 日帝下 東洋拓殖株式會社의 主要事業이 韓國의 完全한 植民地化를 위한 基礎條件인 經濟的 侵略을 위한 一環으로서 國家權力을 背景으로 強權的인 土地侵奪을 實行하는 동시에 日本地主制의 植民地的

12)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 二十年誌」, 京城, 1928.

13) 金容燮, 「韓末日帝下の 地主制」(韓國近代史論), 知識産業社, 1977, p.195.

14) 東洋拓殖株式會社, 「前掲書」, p.180.

15) 東亞日報 1922年 3月 13日字 參照.

移植을 위한 침범적인 役割을 遂行함에 있었다는 事實은 淺田喬二¹⁶⁾의 表現을 빌리지 않아도 土地에 對한 收益性을 絶對적으로 保障해 주는 韓國으로 日本資本의 投資가 集中된 것에서 土地收奪의 目的과 過程 및 結果를 알게 된다. 어떠한 韓國土地에 對한 日本資本의 集中化로 因한 中小地主 및 自作農의 淘汰와 沒落을 招來케 되었고 小農階層은 零細小作農 및 火田民 그리고 農村窮民 심지어는 都市貧民으로서 土幕民¹⁷⁾으로 轉落케 되는 運命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日帝가 韓國內에 있어서의 大土地를 買收하게 되고 經營하게 되자 日人農業移民의 韓國의 誘致를 目的으로 農業關係會社를 設立運營한 바 있었거니와 그의 하나가 바로 東洋拓殖株式會社가 되어 있었다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의 하나이다. 이 當時 日人農業移民의 韓國 誘致를 目的으로 設立된 會社는 東拓 以外에도 上佐勸業(1908年 設立), 石川縣農業株式會社(1908年), 韓國實業株式會社(1908年), 朝日興業株式會社(1908年), 山陰道産業株式會社(1908年), 韓國農業獎勵組合(1908年), 韓國拓殖株式會社(1908年) 등이 있었다.

어떻든 이들 日本人 大地主·商人·金融機關·大企業 등 35個社¹⁸⁾에서 무려 282萬 1,031町步를 1922년에 所有하기에 이르렀고 1931년에 이르러서는 總小作農戶數가 128萬 5,419戶¹⁹⁾에 達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日人과 小作關係를 맺고 있는 韓國人 小作戶數는 東拓을 中心으로 한 日人關係會社農場 176,759戶, 日人個人地主 143,539戶, 그리고 韓日共同會社農場의 경우 8,086戶로 모두 320,294戶가 되어 있었다. 물론

16)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東京, 1968.

17)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查部,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東京, 1942.

18) 淺田喬二, 「上掲書」에서 이들 地主形態를 國家地主·半國家地主·本國(日本人)地主·華族地主·商業資本地主·金融關係地主·農場資本地主·獨占資本地主·財閥地主로 區劃하였다. 그리고 關係會社를 年度別로 보면 1908년에는 14個社, 1915년에는 12個社, 1922년에는 35個社, 1925년에는 45個社, 1929年 41個社, 1931년에 41個社, 1935년에는 20個社로 各各 정리하고 있다.

19)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續編) 京城, 1932, pp. 78~79.

〈表 4〉 年度別 日本人 移住狀況

(單位：名)

年 度 別	移 住 者 數	農 業 從 事 者 數
1908年末	121,168	4,889
1909年末	146,147	5,231
1910年末	171,543	7,812

資料：東洋農地改良組合, 「東洋農地改良組合 50年史」, 1975, pp. 44.

이 數字에는 不在地主分 778,787戶는 包含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으며²⁰⁾ 全體 小作의 41.1%가 日人과 契約關係를 맺는 것이 되고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韓國內의 在外國人으로 居住하면서 東拓을 中心으로 한 日人 農業會社에 依해 農業移民으로 移住하여 온 數조차도 하려도 적지 않았다(表 4 參照).

이렇게 볼 때 日人의 土地에 對한 投資增加에 比例하여 對韓 農業移民事業을 바로 東拓을 媒介로 하여 本格的으로 推進케 되었음을 우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것을 위하여 日帝가 國庫補助金을 비롯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補助 등으로 土地의 買收와 農民誘致活動을 積極적으로 展開한 가운데 이룩케 되었다 함을看過할 수 없다.

Ⅲ. 要 約

첫째, 東拓의 移民事業推進展開는 日本人 移住民이 韓國의 自作農의 土地를 買入케 함으로써 그들을 小作農化케 하려는 政策的인 意中이 깊어 介入된 가운데 이룩된 바 있었다.

둘째, 東拓의 移民事業推進展開는 韓國農村에 日人村落을 建設케 함으로써 植民地統治의 據點을 鞏固케 하려 함에서 이룩되었다.

셋째, 東拓의 移民事業推進展開는 零細小作農들로 하여금 그들의 農

20) 淺田喬二, 「前掲書」, pp. 106~120.

地를 喪失當하게 하고 그로써 困窮의 陷穽에 빠져 마침내 農村에서 遊離當하는 結果를 誘導키 위함에서 이룩되었다.

參考 및 引用文獻

-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先達文化社, 1983.
 青木香代子,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 朝鮮史料研究會, 1960.
 趙璣潛, 「日人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知識產業社, 1985.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拓十年史」, 1918.
 東洋拓殖株式會社, 「韓國中央會報」, 1908.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海外營農定着戰略에 關한 심포지움」, 1987.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 三十年誌」, 1938.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文閣, 1973.
 金容燮, 「韓末日帝下의 地主制」, 知識產業社, 1977.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查部, 「土幕民의 生活·衛生」, 岩波書店, 1942.
 朝鮮總督府, 「朝鮮의 小作慣行」, 續編, 1932.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編, 1944.
 朝鮮總督府 中樞院調查課, 「朝鮮田制考」, 1940.
 黑瀨郎二, 「東洋拓殖會社の植民地經營」, 三千里, 1974.
 宮嶋搏史, 「朝鮮史研究と所有論」, 人文學報, 1984.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會資料集」 I ~ III, 1970.